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지역구 무투표 당선 유형과 성립 조건 : 선거구 정수, 지역 정당환경, 공천구조와 제3후보 진입을 중심으로

정 성 은*

•요 약•

본 연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지역구 1,038개 전수를 대상으로 무투표 당선 유형과 성립 조건을 분석하였다. 무투표 선거구를 한 정당이 의석 전체를 차지한 독식형과 복수의 정치적 소속이 의석을 나누어 가진 분점형으로 구분한 결과, 142개 중 84.5%가 분점형이었다. 무투표 당선은 2인 선거구에 집중되었으며, 독식형은 양대 정당 간 득표율 격차가 큰 지역에서, 분점형은 양대 정당 지지세가 비교적 균형적인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다. 무투표 선거구 중 141개는 양대 정당 공천 인원 합계가 정수와 일치하고 제3후보가 진입하지 않은 조건에서 성립하였다. 반면 같은 공천구조에서 제3후보가 진입한 299개 선거구는 모두 경쟁선거로 치러졌고, 그중 38.1%에서 제3후보 당선인이 나왔다. 이는 무투표 당선을 후보자 부족이라는 법적 결과만으로 보기보다, 선거구 정수와 지역 정당환경을 배경으로 공천과 제3후보 진입이 결합하여 후보자 수를 형성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무투표 당선, 기초의원선거, 선거구 정수, 공천구조, 제3후보 진입

I. 서론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511명이 유권자의 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되었다. 제8회 지방선거의 490명보다도 늘어난 규모이다. 제7회 선거에서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조교수

89명이었던 무투표 당선자가 제8회에 401명 증가했을 때에는 이를 이례적인 폭증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제9회에도 다시 500명을 넘어서면서 그러한 해석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두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연속하여 약 500명의 선출직 공직자가 투표 없이 결정된 것이다.¹⁾ 제9회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선거는 기초의원 지역구였다. 전체 1,038개 선거구 가운데 142개, 13.7%에서 투표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무투표로 결정된 311석은 전체 지역구 의석 2,650석의 11.7%에 해당한다.²⁾ 기초의회 지역구 의석 아홉 자리 가운데 한 자리가 후보자 간 경쟁과 유권자의 선택 없이 채워진 셈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의 급증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면,³⁾ 이번 선거에는 그 규모의 중심을 차지한 기초의원 지역구에서 이 현상이 어떠한 구조로 지속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별 분포는 무투표 당선에 관한 기존 설명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무투표 당선은 흔히 특정 정당의 지지 기반이 고착된 영남과 호남에서 열세 정당이 후보를 내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제9회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인은 서울에서 9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65명으로 뒤를 이었다. 선거구 기준으로 수도권의 무투표 발생률은 22.1%로 호남권의 9.4%, 영남권의 10.4%보다 높았다. 정당 간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하다고 여겨지는 수도권에서 오히려 더 많은 기초의원 선거가 사라진 것이다.⁴⁾ 개별 사례는 이러한 역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4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9명이 투표 없이 당선되었는데, 네 선거구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당선인이 되었다.⁵⁾ 어느 한 정당이 경쟁자를 압도하여 의석을 독점한 것이 아니다. 양대 정당이 나누어 공천한 후보만으로 후보자 명부가 채워졌고, 그 명부가 그대로 당선인 명부가 된 것이다.

법적으로는 등록후보자 수가 선거구 정수를 넘지 않으면 모두 같은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한 정당이 선거구의 의석을 모두 차지한 경우와 둘 이상의 정치적 소속이 의석을 나누어 가진 경우는 정치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전자는 특정 정당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제7회·제8회·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투표당선인 명부, <https://info.nec.go.kr/> (검색일: 2026.07.14.).

2) 제9회 지방선거 기초의원 지역구 1,038개와 지역구 의석 2,650석을 기준으로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 산출한 결과로, 무투표 선거구는 142개였으며 무투표 당선인 311명은 전체 지역구 의석의 11.7%에 해당한다.

3) 정성은, 2022. “지방선거에서의 무투표선거구 결정요인 분석: 제8회 시·도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8권 제2호, 99-131.

4)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 산출한 결과임.

5) 신지영, “6·3 지방선거, 수원시 기초의원 9명 무투표 당선”, 『경인일보』(온라인), 2026년 5월 18일,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3790> (검색일: 2026.07.14.).

의 지역적 우위와 경쟁 후보의 부재를 반영할 수 있지만, 후자는 정당 간 지지경쟁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도 정당별 공천 인원이 선거구 정수 안에서 맞물리면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를 ‘독식형’, 후자를 ‘분점형’으로 구분한다. 무투표 당선을 하나의 범주로만 다룰 경우 지역적 일당우위에 따른 의석 독점과 복수 정당의 의석분점이라는 서로 다른 정치적 구성이 ‘후보자 부족’이라는 설명 속에 함께 묻히기 때문이다.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선택권과 후보자 검증 기회라는 점에서도 문제를 남긴다. 무투표가 확정된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한되고 투표용지도 작성되지 않는다.⁶⁾ 유권자는 후보자의 경력과 공약을 비교하거나 당선 예정자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공식적 기회를 갖지 못한다.⁷⁾ 연속된 지방선거에서 약 500명의 당선자가 반복적으로 투표 없이 결정되었다면, 이를 선거관리상의 예외가 아니라 지방선거의 경쟁성과 대표성을 평가하는 문제로 다뤄야 한다.

기존 논의는 무투표 당선자의 증가, 지역주의와 특정 정당의 독점, 유권자의 선거권과 알 권리, 2인 선거구 중심의 획정 문제에 주목하며 현상의 규모와 규범적 쟁점을 드러내왔다. 다만 복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별 공천 인원과 선거구 정수, 양대 정당 이외 후보의 진입이 어떻게 결합하여 최종 후보자 구성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선거구 단위의 분석은 충분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후보자 수와 정수의 관계가 무투표 여부를 결정하지만, 정치적으로 그 후보자 수를 구성하는 것은 정당의 공천과 후보자의 진입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9회 지방선거 기초의원 지역구 1,038개 전체를 대상으로 무투표 당선 유형과 성립 조건을 분석한다. 선거구 정수와 지역 정당환경에 따른 발생과 유형의 분포를 살펴본 뒤, 양대 정당의 공천 인원과 제3후보 진입이 최종 후보자 구성을 형성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동일한 공천구조에서 제3후보가 진입한 경쟁선거구의 실제 의석 획득도 확인한다. 본 연구는 무투표 당선을 단순한 후보자 부족이나 특정 정당의 지역적 우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 정수와 지역 정당환경, 정당의 공천과 후보자 진입이 결합하여 형성되는 정치적 현상으로 분석한다. 독식형과 분점형의 구분을 통해 동일한 법적 결과에 내재한 서로 다른 정치적 구성을 드러내고, 무투표 당선에 관한 논의를 선거일의 투표 부재에서 후보자가 공급되고 경쟁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6)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의원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275조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

7) 김재현, “6·3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500명 넘었다”, 『한국일보』(온라인), 2026년 5월 31일, 25면.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52817450002350>(검색일: 2026.07.14.).

II.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의 제도적·정치적 조건

1. 무투표 당선 연구의 전개와 분석 과제

국내의 무투표 당선 연구는 법적·규범적 논의에서 출발하였다. 표명환(2016; 2024), 김래영(2018), 문은영(2024)과 송진미(2022)는 유권자의 의사표시가 배제되는 당선인 결정 방식,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과 참정권 보장 등 현행 제도의 쟁점을 검토하였다.⁸⁾ 한편, 해외의 관련 연구들은 무투표·비경합 선거의 발생 조건을 중심으로 선거제도와 지역의 당파성, 의원직의 정치적 가치와 후보자 공급에 주목하였다. 미국의 연방·주의회 선거를 분석한 연구들은 의원직의 정치적 가치와 선거체계의 경쟁성, 지역의 당파성 및 의석의 교체 가능성이 후보자 진입의 유인과 무경쟁 선거의 발생에 연결된다고 보았다.⁹⁾ 중대선거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선거구 정수와 후보자 진입의 관계가 선거경쟁의 수준과 연결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¹⁰⁾ 경쟁의 부재가 의원의 의정활동과 정치적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되었다.¹¹⁾ 일본 지방선거를 분석한 하세현·박인술(2021)은 선거구 정수, 참여 정당과 정치신인의 수, 의원보수 등이 무투표 선거구 형성과 관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¹²⁾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무투표·비경합 선거의 발생은 최종 후보자 수의 부족 자체보다 후보자의 진입과 공급이 어떠한 제도적·정치적 조건에서 형성되는가의 문제와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제8회 지방선거를 계기로 무투표 당선의 발생 조건을 분석한 연구가 본격

8) 표명환. 2016. “공직선거와 당선인 결정 방식”, 『토지공법연구』, 제73집 제2호, 467-483; 표명환. 2024. “공직선거법상 무투표당선제도의 헌법적 문제와 개선방향”, 『법과정책』, 제30권 제2호, 375-400; 김래영. 2018. “공직선거법상 무투표당선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 『법과사회』, 제58호, 137-170; 문은영. 2024. “당선인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무투표 당선과 동수 득표 시 당선인 결정 방법을 중심으로”, 『지역과 정치』, 제7권 제2호, 257-299; 송진미. 2022. “무투표당선 제도의 쟁점과 대안: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에 관하여”, 『이슈와 논점』, 제1993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9) Squire, Peverill. 2000. “Uncontested Seats in State Legislative Election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Vol.25, no.1, 131-146; Myers, Adam S. 2018. “Changing Patterns of Uncontested Seats in Southern State Legislative Elections, 1984-2012”, *Social Science Quarterly*, Vol.99, no.2, 583- 598; Burden, Barry C. and Rochelle Snyder. 2021. “Explaining Uncontested Seats in Congress and State Legislatures”, *American Politics Research*, Vol.49, no.3, 247-258.

10) Niemi, Richard G., Simon Jackman and Laura R. Winsky. 1991. “Candidacies and Competitiveness in Multimember District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Vol.16, no.1, 91-109.

11) Konisky, David M. and Michiko Ueda. 2011. “The Effects of Uncontested Elections on Legislator Performance”,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Vol.36, no.2, 199-229.

12) 하세현·박인술. 2021. “일본 지방선거의 무투표당선 선거구 결정요인 분석: 제19회 통일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 제11권 제2호, 109-132.

화되었다. 정성은(2022)은 전국 광역의원 지역구를 대상으로 지역패권정당과 무투표 선거구의 관계를 분석하고, 광역비례대표선거의 1·2위 정당 간 득표율 격차가 클수록 무투표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¹³⁾ 이는 특정 정당의 지역적 우위가 강한 곳에서 열세 정당의 후보 공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설명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 다만 한 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소선거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정당의 복수공천과 선거구 정수가 함께 작용하는 기초의원 선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8회 지방선거 이후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을 직접 다룬 연구들은 광역의원 선거와 다른 발생 양상에 주목하였다.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이 주로 영·호남의 일당우위 지역에서 나타난 반면,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포함한 양대 정당 경쟁 지역, 특히 2인 선거구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2인 선거구에서는 양대 정당이 각 한 명씩 공천하고 추가 후보가 진입하지 않을 경우 두 후보 모두 무투표로 당선된다. 이에 따라 선거구 정수, 양대 정당 중심의 정당구조, 양대 정당의 공천 인원과 제3정당·무소속 후보의 제한된 진입이 주요한 설명으로 제시되었다.¹⁴⁾ 이들 연구는 2인 선거구의 취약성, 지역적 일당우위와 양대 정당 경쟁 지역에서 나타나는 무투표 당선 차이, 정당 공천과 후보자 공급의 중요성을 밝혀냈다. 특히 정당공천제가 적용되고 복수공천이 가능한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 공급이 개별 후보자의 출마뿐 아니라 정당이 몇 명을 공천하는가에 의해서도 형성되며, 선거구 정수와 선거경쟁의 관계 역시 실제 공천과 후보자 진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을 최종 후보자 수의 부족이라는 결과만으로 보기보다 후보자 수가 어떠한 제도적·정치적 배경 속에서 정당의 공천과 후보자의 진입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거구 정수와 지역 정당환경을 공천과 후보자 진입이 이루어지는 배경조건으로, 양대 정당의 공천 인원과 제3후보 진입을 최종 후보자 구성을 형성하는 성립조건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성립조건은 무투표 당선 독립적인 인과요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수가 실제로 어떤

13) 정성은. 2022. “지방선거에서의 무투표선거 결정요인 분석: 제8회 시·도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8권 제2호, 99-131.

14) 하세현. 2022. “지방선거의 무투표당선 실태 및 입후보자 증대 방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30권 제3호, 223-247; 조원빈. 2022. “2022년 지방선거 결과 분석: 선거제도와 정치적 효과”, 『의정연구』, 제28권 제2호, 43-73; 이준한. 2024. “인천의 무투표 당선에 대한 비교연구”, 『인천학연구』, 제40호, 131-166; 송진미. 2022. “무투표당선 제도의 쟁점과 대안: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에 관하여”, 『이슈와 논점』, 제1993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송진미. 202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현황과 특징: 기초의회 선거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77호), 185-194.

한 공천과 후보자 진입의 조합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구분하기 위한 분석범주이다. 본 연구는 제8회 선거에서 제시된 논의를 제9회 자료에 반복 적용하기보다 이를 다음의 세 측면에서 확장한다. 첫째, 무투표 선거구를 한 정당이 의석 전체를 차지한 독식형과 복수의 정치적 소속이 의석을 나누어 가진 분점형으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지역적 일당우위와 복수 정당의 의석분점을 동일한 현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둘째, 양대 정당의 공천 인원과 선거구 정수의 관계를 2인 선거구에 한정하지 않고 2인부터 5인까지 전체 정수 범위에서 분석한다. 셋째, 제3후보의 진입 여부를 넘어 실제 의석 획득까지 확인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분석 과제와 연결되는 선거구 정수, 지역 정당환경, 공천구조와 후보자 구성의 의미를 차례로 살펴본다.

2. 선거구 정수와 무투표 당선제 제도적 구조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의원을 선출하되 유권자는 후보자 한 명에게 투표하고, 득표순으로 선거구 정수만큼 당선인을 결정하는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로 운영된다. 같은 중선거구제라도 실제로 몇 명을 선출하는지에 따라 정당의 공천 선택과 후보자의 진입 유인, 가능한 의석배분의 범위는 달라진다.

무투표 당선은 등록후보자 수와 선거구 정수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성립한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은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의 등록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넘지 않거나, 이후 후보자의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로 후보자 수가 정수 이하가 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가 한 명만 출마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복수의 후보가 등록하더라도 그 수가 선거구 정수와 같거나 적으면 모두 투표 없이 당선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선거구 정수는 경쟁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후보자 수의 기준이 된다. 2인 선거구에서는 후보자가 세 명 이상이어야 투표를 실시되고, 3인 선거구에서는 네 명 이상이 필요하다. 적은 수의 후보만으로 의석이 모두 채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정수 선거구는 무투표 당선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수가 커질수록 경쟁에 필요한 후보자 수도 늘어나므로 무투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단순히 볼 수는 없다. 정수의 확대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추가 의석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하여 복수공천이나 새로운 후보의 진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 동일한 정수에서도 정당별 공천 인원과 제3후보 진입에 따라 경쟁 여부가 달라진다. 따라서 선거구 정수는 무투표 당선을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원인이라기보다, 정당과 후보자의 공천·출마 판단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지역 정당환경과 무투표 당선의 유형

지방선거의 후보자 공급은 지역의 정당 간 세력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한 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열세 정당의 후보 부재가 곧 우세정당 후보의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열세 정당도 일부 의석을 목표로 제한된 수의 후보를 공천할 수 있고, 양대 정당이 모두 후보를 낸 지역에서도 전체 후보자 수가 선거구 정수를 넘지 않으면 무투표가 성립한다.

지역 정당환경은 세 가지 측면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느 정당이 우세한지는 지역 정당경쟁의 방향을 보여주지만, 그 우위의 크기까지 설명하지는 않는다. 양대 정당 간 득표율 격차는 두 정당 사이의 세력 차이와 지역적 우위의 강도를 보여준다. 양대 정당 합산득표율은 지역 정당경쟁에서 두 정당이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을 나타낸다. 다만 합산득표율이 제3후보의 진입이나 당선 가능성을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양당 중심성이 형성된 지역적 맥락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차이는 무투표 당선의 유형을 구분해야 할 근거가 된다. 독식형은 강한 지역적 일당우위와 다른 정치세력의 후보 공급 약화에, 분점형은 복수 정당의 제한적 공천과 추가 후보의 부재에 연결될 수 있다. 두 유형은 법적 결과는 같지만 그 배경이 되는 정당 경쟁과 의석구성은 다르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우세정당, 양대 정당 간 득표율 격차와 양대 정당 합산득표율을 지역 정당환경의 서로 다른 측면으로 다룬다. 지역 정당환경은 무투표 당선의 유형을 직접 확정하는 조건이라기보다, 정당의 공천과 후보자의 출마 판단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배경을 구성한다.

4. 공천구조와 후보자 구성

무투표 당선 여부를 법적으로 결정하는 후보자 수는 정당의 공천과 개별 후보자의 출마 결정에 의해 형성된다. 특히 정당공천제가 적용되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정당이 후보를 내는지뿐 아니라 한 선거구에 몇 명을 공천하는지가 중요하다. 최종 후보자 수를 이미 주어진 결과로 처리하면 무투표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후보자 수가 어떠한 공천과 후보자 진입을 통해 구성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본 연구에서 공천구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실제로 공천한 후보자 수와 그 합이 선거구 정수와 이루는 관계를 의미한다. 후보자 구성은 여기에 양대 정당 이외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진입이 더해져 형성된 최종 후보자들의 정치적 소속 구성을 가리킨다. 두 수준을 구분하면 양대 정당의 공천만으로 정수가 채워졌는지, 다른 후보의 진입이 전체 후보자 수와 경쟁 여부를 어떻게 달라지게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에서 정당은 예상 지지율과 선거구 정수, 상대 정당의 공천 규모와 후보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공천 인원을 정할 수 있다. 복수공천은 추가 의석의 가능성을 넓히지만, 같은 정당 후보 간 표분산의 위험을 키운다. 반대로 공천 인원을 줄이면 같은 정당 후보 간 표분산의 위험은 줄어들지만 추가 의석의 기회도 제한된다. 2인 선거구에서 양대 정당이 각 한 명씩 공천하고 다른 후보가 진입하지 않으면 두 후보 모두 무투표로 당선된다. 이러한 무투표 당선은 정당 간 명시적 합의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각 정당의 공천 결과가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양대 정당의 각 1인 공천만으로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의 다양한 구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3인 이상 선거구에서는 한 정당의 복수공천, 다른 정당의 제한적 공천, 어느 한 정당의 후보 부재 등 여러 조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정당이 한 명을 공천했는지보다 양대 정당의 공천 인원 합계가 선거구 정수와 일치하는지를 보다 일반적인 공천구조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양대 정당 이외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진입은 이러한 공천구조에 추가되는 후보자 구성의 요소이다. 본 연구는 이들을 ‘제3후보’라는 분석적 범주로 묶는다. 제3후보는 하나의 이념이나 조직적 정치세력을 뜻하지 않으며, 양대 정당 이외의 후보를 구분하기 위한 명칭이다. 제3후보가 진입하면 후보자 수가 늘어 경쟁이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정치적 의미는 투표 실시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의석 획득까지 살펴보아야 후보자 진입이 선거의 형식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대표구성과도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독식형과 분점형은 서로 다른 인과경로를 전제로 설정한 유형이 아니라, 동일한 무투표 당선이라는 법적 결과 안에 존재하는 의석구성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한 분석적 유형이다. 이 구분의 목적은 유형 자체로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 두 유형이 어떠한 지역 정당환경과 공천·후보자 구성에서 나타나는지를 비교하는 데 있다.

후보자 공급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의 정당 간 세력관계는 각 정당이 후보를 확보하고 공천할 유인에 차이를 만든다. 한 정당의 우위가 매우 큰 지역에서는 열세정당 후보의 기대승산이 낮아지면서 후보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¹⁵⁾ 이러한 환경에서 우세정당이 선

15) Squire, Peverill. 2000. "Uncontested Seats in State Legislative Election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Vol.25, no.1, 131-146; Myers, Adam S. 2018. "Changing Patterns of Uncontested Seats in Southern State Legislative Elections, 1984-2012", *Social Science Quarterly*, Vol.99, no.2, 583-598; Burden, Barry C. and Rochelle Snyder. 2021. "Explaining Uncontested Seats in Congress and State

거구 정수만큼 후보를 공천하고 다른 정치세력이 후보를 공급하지 않으면 독식형 무투표가 성립할 수 있다. 반면 양대 정당의 지지세가 비교적 균형적인 지역에서는 두 정당 모두 일부 의석의 획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에서 복수공천은 추가 의석의 가능성과 함께 같은 정당 후보 간 표 분산의 위험도 수반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천 인원이 제한될 경우, 양대 정당의 공천 인원 합계가 선거구 정수와 맞물릴 수 있으며 제3후보가 진입하지 않으면 분점형 무투표가 성립한다. 따라서 독식형은 지역적 우위와 후보 공급의 비대칭에, 분점형은 상대적으로 경쟁적인 정당환경에서의 제한적 공천과 추가 후보 부재에 연결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가 관찰하는 것은 실제 공천 인원과 후보자 구성이며, 정당 내부의 공천 동기나 전략적 의도는 직접 관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정당의 의도적인 경쟁 회피나 사전 조정에 따른 인과경로로 해석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무투표 유형이 나타나는 정치적 맥락과 후보자 구성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적 틀로 사용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선거구 정수와 지역 정당환경을 공천과 후보자 진입이 이루어지는 배경조건으로, 양대 정당의 공천 인원과 제3후보 진입을 최종 후보자 구성을 형성하는 성립조건으로 구분한다. 선거결과는 경쟁, 독식형 무투표와 분점형 무투표로 나누어 비교한다. 이러한 분석체계는 단선적 인과관계를 전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결과에 어떠한 제도적 환경과 후보자 구성에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분석대상과 자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실시된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 전체이다.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¹⁶⁾ 지역구 1,038개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¹⁷⁾

Legislatures”, *American Politics Research*, Vol.49, no.3, 247-258.

16)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이 발생하였으나, 비례대표선거는 정당명부의 제출과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배분을 기초로 하므로, 후보자 개인의 공천 인원과 선거구 정수, 제3후보 진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구 선거와 분석단위 및 당선결정 구조가 다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7)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종전 광주·전남의 광역단위 통합이 반영되었으나,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는 종전 체계를 유지하였으므로 해당 기초의원 지역구를 모두 분석에 포함하였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단층제 구조이므로 포함하지 않는다.

각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구 정수, 후보자와 당선인의 정치적 소속, 정당별 공천 인원, 제3후보의 진입과 당선 여부, 지역 정당환경을 결합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이 제공하는 선거구 현황, 후보자 명부, 당선인 명부와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개표결과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선거구 현황에서는 지역구별 정수와 관할구역을 확인하였고, 후보자 명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 인원, 양대 정당 이외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수를 집계하였다. 당선인 명부를 이용해 무투표 선거구의 의석 구성과 경쟁선거에서 제3후보가 획득한 의석을 확인하였다. 지역 정당환경은 각 기초의원 선거구가 속한 구·시·군의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결과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광역단체명, 구·시·군명과 선거구명을 기준으로 결합하였다. 결합 이후 선거구 식별자의 중복 여부, 등록후보자 수와 정당별 후보자 수의 합, 선거구 정수와 무투표 판정, 당선인 수와 정당별 당선인 수를 상호 대조하였다. 최종 분석자료는 1,038개 선거구와 48개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집계항목에서 불일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2. 연구의 분석체계와 연구문제

등록후보자 수와 선거구 정수의 관계는 무투표 당선의 직접적인 법적 기준이다. 그러나 이 기준만으로는 최종 후보자 수가 어떠한 공천과 후보자 진입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동일한 법적 결과인 무투표 당선 안에서 서로 다른 의석구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무투표 당선과 관련된 조건을 배경조건과 성립조건으로 구분한다. 배경조건에는 선거구 정수와 지역 정당환경이 포함된다. 선거구 정수는 선출할 의석 수와 후보자 수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조건이다. 지역 정당환경은 지역의 우세정당, 양대 정당 간 경쟁의 균형 정도, 지역 정당경쟁에서 양대 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포괄한다. 성립조건은 후보자 등록 시점에 확인되는 공천구조와 후보자 구성으로, 최종 후보자 수가 어떠한 공천과 후보자 진입의 조합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구분하는 분석범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 인원 합계가 선거구 정수와 일치하는지, 양대 정당 이외의 후보가 진입했는지를 중심으로 이를 분석한다. 이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양대 정당’으로, 그 밖의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를 ‘제3후보’로 지칭한다. 선거결과는 경쟁, 무투표 독식형, 무투표 분점형으로 구분한다. 경쟁은 등록후보자 수가 정수를 초과하여 투표가 실시된 경우이다. 독식형은 무투표로 결정된 의석을 하나의 정당이 모두 차지한 경우이

며, 분점형은 둘 이상의 정치적 소속이 의석을 나누어 가진 경우이다.

다음 <표 3-1>은 선거구 정수와 지역 정당환경에 따라 무투표 당선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공천구조와 후보자 구성의 조건조합이 경쟁과 무투표 당선 유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틀이다. 본 연구는 배경조건이 정당의 공천이나 후보자 진입을 직접 결정한다고 전제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분석 층위에서 관찰되는 관련성을 구분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표 3-1> 연구의 분석체계

배경조건	성립조건	선거결과
* 제도적 조건: 선거구 정수 * 정치적 조건: 지역 정당환경	* 공천구조: 양대 정당 공천 인원과 정수의 일치 여부 * 후보자 구성: 제3후보 진입 여부	경쟁 무투표 독식형 무투표 분점형

전술한 분석체계에 따라 다음 네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무투표 당선의 발생률과 유형별 분포는 선거구 정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둘째, 지역 정당환경에 따라 무투표 당선의 발생과 유형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공천구조와 후보자 구성은 어떠한 조건조합을 이루며, 각 조합에서 경쟁과 무투표 당선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넷째, 양대 정당의 공천 인원이 선거구 정수와 일치하고 제3후보가 진입한 경쟁선거구에서, 제3후보의 실제 의석 획득은 어느 정도 나타나며 선거구 정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네 번째 연구문제는 실제로 제3후보가 진입한 경쟁선거구의 의석 획득을 다루며, 미진입 선거구의 가상적 결과나 제3후보 진입의 인과효과를 추정하지 않는다.

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변수는 선거결과, 제도적·정치적 배경조건, 공천구조와 후보자 구성, 제3후보의 실제 의석 획득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수의 정의와 측정 방식은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주요 변수의 정의와 측정

분석영역	변수	정의와 측정
선거결과	무투표 여부	등록후보자 수가 선거구 정수를 초과하면 경쟁, 정수 이하이면 무투표
	선거결과 유형	경쟁·독식형·분점형

분석영역	변수	정의와 측정
제도적 조건	선거구 정수	해당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 2인·3인·4인·5인
정치적 조건	지역의 우세정당	구·시·군별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득표율 1위 정당
	양대 정당 간 득표율 격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득표율 차이의 절댓값
	양대 정당 합산득표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득표율의 합
보조변수	권역 ¹⁸⁾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강원권
공천구조	양대 정당 공천 인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록후보자 수의 합
	공천 인원-정수 일치	양대 정당 공천 인원과 선거구 정수의 일치 여부
후보자 구성	제3후보 진입	양대 정당 이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가 한 명 이상 등록한 경우
의석	제3후보 당선 선거구	제3후보 당선인이 한 명 이상 존재하는 선거구
	제3후보 후보자 당선율	전체 제3후보 가운데 실제 당선된 후보자의 비율
	제3후보 의석 비율	분석대상 선거구의 전체 의석 가운데 제3후보가 획득한 의석의 비율

선거결과는 경쟁과 무투표로 구분하고, 무투표 선거구는 당선인이 모두 동일 정당 소속인 독식형과 둘 이상의 정치적 소속이 의석을 나누어 가진 분점형으로 나누었다. 이는 같은 법적 결과 안에 존재하는 의석구성의 차이를 함께 보기 위한 구분이다.

제도적 조건이 되는 선거구 정수는 해당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기초의원의 수로 측정하였다. 제9회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지역구는 2인부터 5인 선거구까지 분포한다. 정수 자체가 무투표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으며, 투표 실시 여부는 등록후보자 수와 정수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다만 정수가 작을수록 적은 수의 후보만으로 선출정원이 채워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선거구 정수를 무투표 당선의 제도적 배경조건으로 다룬다.

정치적 조건이 되는 지역 정당환경은 각 기초의원 선거구가 속한 구·시·군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득표율로 측정하였다. 무투표 선거구에서는 기초의원 후보별 득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쟁선거구와 무투표 선거구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지표가 필요하다. 이 값은 개별 기초의원 선거구의 정당 지지율을 직접 나타내기보다 해당 선거 당시의 지역 정당경쟁 환경을 보여주는 맥락지표로 사용한다.¹⁹⁾ 우세정당은 해당 구·시·

18) 종전 광주·전남 지역은 호남권으로 분류하며, 세종·제주는 기초의원 지역구가 없어 포함되지 않음.

19)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는 기초의원 지역구의 무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실시되므로, 무투표 선거구에서도 정당득표율을 동일하게 관찰할 수 있다. 다만 이 지표는 무투표 당선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변수가 아니라 동일 선거에서 측정된 값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무투표 당선의 인과적 선행요

군의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으로 측정하였다. 양대 정당 간 득표율 격차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득표율 차이의 절댓값이며, 값이 클수록 한 정당의 지역적 우위가 강한 것으로 해석한다. 양대 정당 합산득표율은 두 정당 득표율의 합으로, 지역 정당경쟁에서 양대 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공천구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 수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두 정당의 후보자 수를 합한 값을 양대 정당 공천 인원으로 정의하고, 이 값이 선거구 정수와 일치하는지를 구분하였다. 공천 인원과 정수가 일치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자 수의 합이 해당 선거구의 정수와 같다는 의미이다. 제3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외 정당의 후보와 무소속 후보를 모두 포함한다. 제3후보가 한 명 이상 등록한 경우를 진입,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미진입으로 구분하였다.²⁰⁾ 양대 정당 공천 인원과 정수의 일치 여부에 제3후보 진입 여부를 결합하면 일치·미진입, 일치·진입, 불일치·미진입, 불일치·진입의 네 가지 조건조합이 구성된다. 이 조건조합은 무투표 여부를 새롭게 판정하기 위한 변수가 아니다. 등록후보자 수가 양대 정당의 공천과 제3후보의 진입을 통해 어떠한 정치적 구성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구분하기 위한 분석범주이다. 각 조건조합에서 경쟁·독식형·분점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여 공천구조와 후보자 구성이 선거결과에 대응하는 양상을 확인한다.

제3후보의 실제 의석 획득은 양대 정당의 공천 인원이 선거구 정수와 일치하고 제3후보가 진입하여 경쟁이 성립한 선거구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제3후보가 한 명 이상 당선된 선거구의 비율, 전체 제3후보 가운데 실제 당선된 후보자의 비율, 분석대상 선거구의 전체 의석 가운데 제3후보가 획득한 의석의 비율을 각각 산출하였다. 세 지표는 각각 제3후보 당선의 범위, 출마자 대비 당선 비중, 전체 의석배분에서 차지한 몫을 보여준다. 제3후보 당선인의 정치적 소속도 함께 집계하여 무소속과 각 제3정당의 의석 획득 양상을 살펴본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기술통계와 교차분석을 중심으로 제9회 지방선거 기초의원 지역구의 무투표 당선 분포와 성립 양상을 분석한다. 분석대상이 기초의원 지역구 1,038개 전체이므로, 제

인으로 해석하지 않고, 해당 선거 당시의 지역 정당경쟁 환경을 나타내는 맥락지표로 사용한다.

20) 제3후보 관련, ‘진입’은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구성에 양대 정당 이외의 후보가 한 명 이상 포함된 선거구 수준의 조건을, ‘출마’는 개별 후보자의 행위를, ‘등록’은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등록 절차를 가리킨다. 이하에서는 선거구 수준의 조건으로서 ‘진입’과 개별 후보자의 행위로서 ‘출마’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시되는 빈도와 비율은 해당 선거에서 실제로 관찰된 결과이다. 분석의 초점은 다른 지방 선거의 결과를 확률적으로 예측하기보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어떠한 제도적·정치적 환경에 분포하고, 어떤 공천구조와 후보자 구성을 통해 성립했는지를 살펴보는 데 둔다.²¹⁾

첫째, 선거구 정수별로 무투표 당선의 발생률과 경쟁·독식형·분점형의 분포를 비교한다. 정수가 커짐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일정한 방향으로 감소하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이를 통해 선거구 정수가 무투표 당선의 발생 빈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무투표가 성립한 이후 독식형과 분점형의 구성까지 구분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한다.

둘째, 지역의 우세정당, 양대 정당 간 득표율 격차와 양대 정당 합산득표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의 발생과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 우세정당별로 경쟁·독식형·분점형의 분포를 비교하고, 두 득표율 지표는 각 유형의 중앙값과 전반적인 분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역 정당환경은 구·시·군 단위로 측정되므로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여러 선거구가 동일한 값을 공유한다. 이러한 자료구조를 고려하지 않으면 선거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이 분석결과에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당환경에 관한 주요 결과는 분석자료에서 시·도명과 구·시·군명을 결합해 식별한 253개 지역 단위의 군집구조를 유지한 보조분석을 통해 다시 확인하였다.²²⁾ 권역은 무투표 당선 유형의 지역적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한다.

셋째, 네 가지 조건조합별로 경쟁·독식형·분점형의 빈도와 비율을 제시한다. 양대 정당의 공천 인원과 제3후보 수는 최종 등록후보자 수를 구성하고, 등록후보자 수와 선거구 정수의 관계가 투표 실시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 따라서 조건조합 분석은 각 요인의 영향력을 추정하기보다 무투표 당선의 법적 기준이 어떠한 정당별 공천과 후보자 진입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정치적으로 분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넷째, 양대 정당 공천 인원이 정수와 일치하고 제3후보가 진입한 경쟁선거구를 별도로 분석한다. 제3후보 당선 선거구 비율, 후보자 당선율과 의석 비율, 당선인의 정치적 소속을 제시하고 정수별 분포도 비교한다. 5인 선거구는 사례가 두 개에 불과하므로 일반적

21) 본 연구는 공천구조와 제3후보 진입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본 분석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양대 정당 공천 인원과 제3후보 수는 최종 등록후보자 수의 구성요소이고, 등록후보자 수와 선거구 정수의 관계가 무투표 여부를 법적으로 결정한다. 이 변수들을 회귀모형에 함께 투입하면 법적 판정관계를 다시 추정하거나 일부 조건조합에서 완전분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요인의 독립적 효과보다 후보자 수가 실제로 어떠한 정당별 공천과 후보자 진입을 통해 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지역 정당환경은 유형별 정치적 맥락을 비교하는 배경조건으로 사용한다.

22) 지역 단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시·도 및 구·시·군 표기를 기준으로 구성한 군집 식별단위이다. 일반구도 별도의 단위로 포함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인 경향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분석에서는 실제 빈도와 비율, 유형별 분포와 조건조합을 우선 제시한다. 통계적 검정은 관찰된 분포 차이의 방향과 일관성을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며, 결과의 해석은 실제 차이의 크기와 정치적 의미에 둔다.²³⁾

IV. 분석결과

1. 무투표 당선 기본 현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기초의원 지역구 무투표 당선 기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1〉 제9회 기초의원 지역구 무투표 당선 기본 현황

구분	빈도	전체 구성비(%)	무투표 구성비(%)
선거구 기준(N = 1,038)			
경쟁선거구	896	86.3	-
무투표 선거구	142	13.7	100.0
독식형	22	2.1	15.5
분점형	120	11.6	84.5
의석 기준(N = 2,650)			
투표로 결정된 의석	2,339	88.3	-
무투표로 결정된 의석	311	11.7	100.0
더불어민주당	174	6.6	55.9
국민의힘	136	5.1	43.7
진보당	1	0.04	0.3

주: 전체 구성비와 무투표 구성비는 각각 해당 기준의 전체(N)와 무투표(선거구 기준 142개, 의석 기준 311석)를 100으로 한 백분율.

기초의원 지역구 1,038개 가운데 142개에서는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었다. 전체 선거구의 13.7% 규모로, 대략 일곱 곳 중 한 곳이다. 이렇게 채워진 의석은 311석으로

23) 범주형 분포에는 Fisher-Freeman-Halton 정확검정과 Cramér's V를 사용하였고, 선거구 정수 증가에 따른 무투표 발생률의 추세는 Cochran-Armitage 검정으로 확인하였다. 연속형 지표의 유형 간 차이에는 Kruskal-Wallis 검정과 ϵ^2 를 사용하고, 쌍별 비교에는 Holm 보정을 적용하였다. 지역 정당환경 분석에는 253개 지역 집계단위의 군집구조를 유지한 10,000회 순열검정을 병행하였다.

전체 지역구 의석 2,650석의 11.7%에 해당한다. 무투표 선거구를 유형별로 나누면 독식형이 22개, 분점형이 120개로 무투표 선거구의 84.5%가 분점형이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무투표 선거구 79개가 모두 분점형이었던 반면, 호남권에서는 16개 중 15개가 독식형이었다. 무투표 당선자의 다수는 복수의 정치적 소속이 의석을 나누어 가진 형태였으며, 두 유형의 지역적 분포도 뚜렷하게 달랐다.

2. 선거구 정수와 무투표 당선의 발생 및 유형

지역구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은 선거구 정수가 작을수록 많이 발생했다. <표 4-2>를 통해 선거구 정수별 무투표 당선의 발생과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선거구 정수별 무투표 발생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었으며($p < 0.001$, Cramér's $V = 0.244$), 정수가 커질수록 발생률이 낮아지는 추세도 별도의 검정에서 확인되었다($p < 0.001$).

<표 4-2> 선거구 정수별 무투표 당선의 발생과 유형

정수	선거구 수			무투표 당선 발생률(%)	무투표 당선의 유형		
	전체	경쟁	무투표		독식형	분점형	분점형 비중(%)
2인	532	416	116	21.8	18	98	84.5
3인	445	420	25	5.6	4	21	84.0
4인	54	53	1	1.9	0	1	100.0
5인	7	7	0	0.0	0	0	-
합계	1,038	896	142	13.7	22	120	84.5

2인 선거구에서는 532개 가운데 116개, 다섯 곳 중 한 곳꼴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었다. 발생률은 3인 선거구에서 5.6%로 크게 떨어지고, 4인 선거구에서는 54개 중 1개에서만 나타났다. 반면 5인 선거구 7개는 모두 경쟁선거로 치러졌다. 전체 무투표 선거구 142개 중 116개(81.7%)가 2인 선거구에 집중되었다. 독식형 22개 가운데 18개, 분점형 120개 가운데 98개도 2인 선거구에서 나타났다. 두 유형이 모두 소정수 선거구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선거구 정수는 특정한 무투표 유형보다 무투표 당선의 발생 가능성 전반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포는 선출할 의석수가 적을수록 등록후보자 수가 정수와 같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와 연결된다. 2인 선거구에서는 양대 정당이 각 한 명씩만 공천해도 정수가 채워진다. 정수가 커질수록 무투표가 성립하려면 더 많은 의석이 정당별 공천으로 채워져

야 하고, 추가 공천이나 제3후보 진입으로 경쟁이 형성될 여지도 넓어진다. 4인과 5인 선거구에서 무투표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이러한 제약을 보여준다.

선거구 정수에 따른 차이는 무투표 당선의 유형보다 발생 여부에서 뚜렷했다. 실제로 무투표 선거구 안에서 정수와 독식형·분점형 구성의 관련성은 매우 작았다(Cramér's $V=0.036$). 2인 선거구의 무투표 사례 가운데 분점형은 98개로 84.5%였고, 3인 선거구에서도 25개 가운데 21개인 84.0%가 분점형이었다. 무투표 당선이 성립한 이후 독식형과 분점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2인과 3인 선거구에서 거의 같았다. 4인 선거구의 무투표 사례는 분점형 1개뿐이었으나, 사례 수가 적어 이를 일반적인 유형적 특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선거구 정수는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넓히거나 좁히지만, 의석이 한 정당에 집중될지 복수의 정치적 소속에 나뉘지까지 직접 결정하지는 않았다. 독식형과 분점형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정수와 함께 지역 정당 환경과 실제 공천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지역 정당환경에 따른 무투표 당선의 차이

선거구 정수가 무투표의 제도적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지역 정당환경은 독식형과 분점형이 놓인 정치적 맥락을 보여준다. <표 4-3>은 우세정당별 무투표 당선의 발생과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 4-3> 지역의 우세정당별 무투표 당선의 발생과 유형

지역의 우세정당	선거구 수			무투표 당선의 유형	
	전체	경쟁선거	무투표 선거(비율)	독식형	분점형(비율)
더불어민주당	577	489	88(15.3%)	15	73(83.0%)
국민의힘	461	407	54(11.7%)	7	47(87.0%)
합계	1,038	896	142(13.7%)	22	120(84.5%)

주: 지역의 우세정당은 해당 선거구가 속한 구·시·군의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을 의미한다. 구·시·군의 군집구조를 유지한 분석에서 우세정당에 따른 무투표 발생과 선거결과 유형의 차이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각각 $p=0.194$, $p=0.352$).

지역에서 양대 정당 중, 어느 정당이 우세한지만으로는 무투표 당선의 발생과 유형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다. 더불어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577개 선거구 가운데 88개 (15.3%)가 무투표,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서는 461개 가운데 54개인 11.7%가 무투표 당선이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의 무투표 발생률이 국민의힘 우세 지역보다 3.6%포인트 높

았으나, 구·시·군의 군집구조를 유지한 분석에서는 우세정당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무투표 당선 유형의 구성도 유사했다. 독식형과 분점형은 두 정당이 각각 우세한 지역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분점형 비중은 민주당 우세 지역 83.0%, 국민의힘 우세 지역 87.0%로 선거결과 유형 전체를 비교한 군집보존 분석에서도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앞서는가보다 얼마나 앞서는가였다.

선거결과 유형 간 차이는 양대 정당 간 득표율 격차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표 4-4>에서 독식형 선거구가 속한 구·시·군의 득표율 격차 중앙값은 50.25%포인트로, 경쟁선거구의 13.01%포인트와 분점형의 8.33%포인트를 크게 웃돌았다. 이러한 유형 간 차이는 구·시·군의 군집구조를 유지한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p < 0.001$, $\epsilon^2 = 0.059$). 독식형의 양대 정당 간 득표율 격차는 경쟁선거구와 분점형에 비해 현저히 컸다. 이는 독식형이 한 정당이 단순히 우세한 지역이 아니라, 양대 정당 간 세력 격차가 매우 큰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표 4-4> 선거결과 유형별 지역 정당환경

선거결과 유형	선거구 수	양대 정당 간 득표율 격차	양대 정당 합산득표율
경쟁	896	13.01 [6.56-33.54]	90.96 [86.44-93.71]
독식형	22	50.25 [40.19-54.88]	79.82 [76.55-91.17]
분점형	120	8.33 [4.13-12.68]	88.83 [87.04-92.67]

주: 수치는 해당 유형 선거구가 속한 구·시·군의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결과를 기준으로 한 중앙값이며, 대괄호 안은 제1사분위수와 제3사분위수임. 득표율 격차와 합산득표율의 단위는 각각 %포인트와 %. 득표율 격차의 유형 간 차이는 구·시·군의 군집구조를 유지한 분석에서도 확인되었으며($p < 0.001$), 효과크기는 $\epsilon^2 = 0.059$ 였다. 합산득표율의 유형 간 차이도 확인되었으나($p = 0.015$), 효과크기는 $\epsilon^2 = 0.011$ 로 작았다. 독식형과 분점형의 쌍별 차이는 Holm 보정 후에도 유지되었다($p = 0.005$).

주목할 점은 분점형의 양대 정당 간 득표율 격차 중앙값이 경쟁선거구보다도 작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투표 당선이 정당경쟁이 약한 지역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양대 정당의 경쟁 기반이 존재해도 두 정당의 공천 인원이 정수 안에서 맞물리고 제3후보가 진입하지 않으면 투표 없이 의석이 배분될 수 있다. 독식형이 지역적 일당우위와 상대 정당의 후보 부재에 가까운 유형이라면, 분점형은 정당경쟁이 후보자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은 유형이다. 양당의 지지세가 팽팽한 지역에서는 각 정당이 추가 의석을 위한 복수공천보다 같은 정당 후보 간 표분산 위험을 줄이는 제한적 공천을 택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 분점형의 분포는 정당의 위험회피적 공천이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양대 정당 합산득표율에서도 유형별 차이가 나타났다. 중앙값은 경쟁선거구 90.96%, 분점형 88.83%, 독식형 79.82%였다. 독식형과 분점형의 차이는 군집구조를 유지한 쌍별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다만 효과크기가 작고 분포도 상당 부분 겹쳐, 합산득표율은 양대 정당 간 득표율 격차만큼 유형을 선명하게 구분하지 못했다.

한편, 독식형 지역에서 양대 정당 합산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결과는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당 지역에 양대 정당 이외 정당에 대한 지지가 존재했음을 보여줄 뿐, 그 지지가 지역구 후보 진입으로 이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비례대표선거의 지지와 지역구 후보 공급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제3정당에 일정한 지지가 존재하더라도 후보를 공천하거나 무소속 후보가 진입하지 않으면,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한 정당이 의석을 독식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우세정당의 정체보다 양대 정당 간 격차가 유형의 차이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독식형은 한 정당의 지역적 우위가 매우 큰 지역에 집중되었고, 분점형은 양대 정당의 지지세가 비교적 균형적인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의 정당경쟁이 실제 후보자 경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정당의 공천과 제3후보의 진입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4. 공천구조와 후보자 구성의 조건조합

앞선 분석은 무투표 당선이 선거구 정수와 지역 정당환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분포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투표 실시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최종 등록후보자수와 선거구 정수의 관계이다. 본 절에서는 등록후보자 수가 양대 정당의 공천과 제3후보의 진입을 통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표 4-5>는 공천구조와 후보자 구성의 조건조합별 선거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양대 정당 공천 인원과 선거구 정수의 일치 여부, 제3후보 진입 여부를 결합한 네 가지 조건조합은 경쟁과 무투표 당선의 형성과정에서 뚜렷하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가장 분명한 결과는 양대 정당의 공천 인원이 선거구 정수와 일치하고 제3후보가 진입하지 않은 141개 선거구에서 모두 무투표 당선이 성립했다는 점이다. 양대 정당 후보만으로 선출할 의석 수가 정확히 채워졌고, 이를 초과하는 후보가 추가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가 실시되지 않았다. 141개 무투표 선거구에서 119개의 선거결과는 분점형이었고, 22개는 독식형이었다.

〈표 4-5〉 공천구조와 후보자 구성의 조건조합별 선거결과

조건조합		선거구 수			무투표 당선 유형	
양대 정당 공천 인원과 선거구 정수	제3후보 진입	전체	경쟁	무투표	독식형	분점형
일치	없음	141	0	141(100%)	22	119
일치	있음	299	299	0(0.0%)	0	0
불일치	없음	247	247	0(0.0%)	0	0
불일치	있음	351	350	1(0.3%)	0	1
합계		1,038	896	142(13.7%)	22	120

주: 불일치·제3후보 진입 조합에서 나타난 분점형 1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광산구라선거구(원자료상 광주광역시)이다.

두 유형은 모두 양대 정당 공천 인원의 합이 정수와 일치하고 제3후보가 없었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정당별 공천의 구성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분점형에서는 복수의 정치속속이 선거구 정수를 나누어 채웠다. 양대 정당의 공천 결과가 그대로 의석배분으로 이어진 것이다. 반면 독식형에서는 한 정당이 선거구 정수 전체에 해당하는 후보를 등록하고 상대 정당과 제3후보가 진입하지 않아 한 정당이 모든 의석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독식형과 분점형의 차이는 등록후보자 수의 많고 적음보다 정수를 어떤 정당이 채웠는가에 발생한다. 두 유형 모두 후보자 수가 정수를 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독식형은 한 정당의 공천과 다른 정치세력의 부재가 결합한 결과이며, 분점형은 복수 정당의 공천 인원이 정수 안에서 배분된 결과이다. 무투표 당선을 하나의 범주로만 다룰 경우 이러한 공천구조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양대 정당의 공천 인원이 정수와 일치한 상태에서 제3후보가 진입한 299개 선거구에서는 모두 투표가 실시되었다. 양대 정당 후보만으로는 후보자 수와 정수가 같았지만, 제3후보 한 명의 진입만으로도 등록후보자 수가 정수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대 정당의 공천구조가 같더라도 제3후보의 존재 여부에 따라 투표 없는 의석배분과 경쟁선거로 갈릴 수 있다.

다만 네 가지 조건조합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선거결과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양대 정당 공천 인원이 정수와 일치하고 제3후보가 없는 조합은 후보자 수가 정수와 같으므로 법적으로 무투표가 되며, 동일한 공천구조에서 제3후보가 진입한 조합은 후보자 수가 정수를 초과하므로 경쟁이 성립한다. 반면 공천 인원과 정수가 일치하지 않는 조합에서는 공천 인원 합계가 정수보다 적은지 많은지, 제3후보가 부족한 후보 수를 채우는

지 정수를 초과하게 만드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제3후보가 없었던 불일치 조합 247개는 모두 양대 정당 공천 인원이 선거구 정수를 초과한 경우였다. 양대 정당이 합계 기준으로 정수보다 적게 공천하고 제3후보도 진입하지 않아 무투표가 된 선거구는 한 곳도 없었다. 반면 불일치·제3후보 진입 조합에서는 351개 선거구 중 350개가 경쟁선거였고, 광산구라선거구 1개만 무투표 분점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건조합 분석의 경험적 의미는 법적 판정식을 다시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후보자 구성 가운데 어떤 형태가 실제 선거구에서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물론 이러한 분포만으로 정당 간 사전 조정이나 의도적 경쟁 회피를 단정할 수는 없다.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실제 공천 인원과 후보자 등록, 그에 따른 선거결과이다. 개별 정당의 공천 동기와 전략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5. 경쟁선거구에서 제3후보의 실제 의석 획득

앞서 양대 정당의 공천 인원이 정수와 일치하더라도 제3후보가 진입한 299개 선거구에서는 모두 투표가 실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제3후보의 진입으로 경쟁이 실시된 이들 선거구에서, 제3후보의 출마가 투표 실시를 넘어 실제 의석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본다.

〈표 4-6〉 선거구 정수별 제3후보의 실제 의석 획득

정수	선거구 기준		제3후보 기준		의석 기준	
	제3후보 진입 선거구	제3후보 당선 선거구(%)	출마자	당선인(%)	전체 의석	제3후보 의석비율(%)
2인	145	45(31%)	231	45(19.5%)	290	15.5
3인	125	54(43.2%)	250	56(22.4%)	375	14.9
4인	27	15(55.6%)	59	19(32.2%)	108	17.6
5인	2	0(0.0%)	6	0(0.0%)	10	0.0
합계	299	114(38.1%)	546	120(22.0%)	783	15.3

주: 3인과 4인 선거구에서 당선인 수가 당선 선거구 수보다 많은 것은 5개 선거구에서 제3후보가 2인 이상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결과부터 확인하면, 제3후보의 출마는 후보자 수를 늘리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299개 선거구에 출마한 제3후보 546명 중, 120명이 당선되었다.²⁴⁾ 후보자 다섯 명 중 한 명꼴(22.0%)이다. 선거구를 기준으로 보면 299개 중 114개, 38.1% 선거구에서 제3후보 당선

인이 나왔다. 299개 선거구의 전체 의석 783석 가운데 제3후보가 차지한 의석은 120석으로 전체 의석의 15.3%에 달한다. 양대 정당이 이미 정수만큼 후보를 등록한 선거구에서도, 제3후보가 양대 정당 후보를 제치고 의석을 얻은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선거구 정수별로 보면 2인부터 4인 선거구까지는 정수가 커질수록 제3후보 당선인이 나온 선거구의 비율이 높아졌다. 2인 선거구에서는 31.0%의 선거구에서 제3후보 당선인이 나왔고, 3인 선거구에서는 43.2%, 4인 선거구에서는 55.6%로 높아졌다. 후보자 기준 당선율도 2인 선거구의 19.5%에서 3인 선거구 22.4%, 4인 선거구 32.2%로 상승하였다. 이는 정수가 커질수록 당선에 필요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와 맞닿아 있다. 2인 선거구에서 제3후보가 당선되려면 양대 정당 후보 두 명 중 한 명을 앞서야 하지만, 3인과 4인 선거구에서는 선출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득표 순위가 당선권에 들 여지도 커진다.

다만 제3후보의 의석 점유율은 2인 15.5%, 3인 14.9%, 4인 17.6%로 15% 안팎에 머물렀다. 정수가 커지면서 당선인이 나온 선거구의 범위는 넓어졌지만, 제3후보가 차지한 비중은 15% 안팎에 머물러 전체 의석배분에서는 양대 정당의 우위가 유지되었다. 5인 선거구에서는 제3후보 당선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분석대상에 포함된 5인 선거구가 2개뿐이므로, 이를 정수가 커질수록 제3후보의 당선이 어려워진다는 결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정수별 차이는 2인부터 4인 선거구에서 관찰된 분포를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양대 정당의 공천 인원이 선거구 정수와 일치한 상태에서 제3후보가 진입한 299개 선거구 가운데 38.1%에서 제3후보 당선인이 나왔다. 해당 조건조합의 선거구에 출마한 제3후보의 22.0%가 당선되었고, 이들은 해당 선거구 전체 의석의 15.3%를 차지하였다. 제3후보의 진입은 투표 실시 여부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당수 선거구에서 실제 의석 배분에도 연결되었다. 다만 이 결과는 실제로 제3후보가 진입한 선거구에서 관찰된 의석 획득을 보여줄 뿐이다. 제3후보가 없었던 무투표 선거구에서도 출마했다면 같은 당선 가능성이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는 없다. 후보자의 경쟁력과 지역적 기반, 정당 조직력이 선거구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24) <표 4-5>에서 확인된 공천구조와 후보자 구성의 조건조합 중, ‘양대 정당 공천인원과 선거구 정수 일치 - 제3후보 진입’ 조건조합에 속하는 299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제3후보 당선인 120명의 정치적 소속을 살펴보면 무소속이 75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진보당 23명(19.2%), 조국혁신당 16명(13.3%), 정의당 5명(4.2%), 개혁신당 1명 순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지역구 1,038개 전체를 대상으로 무투표 당선의 유형과 성립 조건을 분석하였다. 제9회 선거에서는 142개 선거구의 311석이 무투표로 결정되어 전체 지역구 의석의 11.7%를 차지했다. 제8회에 이어 높은 수준의 무투표 당선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특정 선거나 일부 지역의 예외적 현상으로만 다루기는 어렵다. 무투표 선거구의 84.5%는 복수의 정치적 소속이 의석을 나누어 가진 분점형이었다. 독식형은 양대 정당 간 득표율 격차가 큰 지역에, 분점형은 지지세가 비교적 균형적인 지역에 집중되었고, 수도권 지역은 모두 분점형이었다. 지역주의나 일당우위에 기초한 설명은 독식형에는 부합하지만, 무투표 당선의 다수를 차지하는 분점형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복수 정당이 의석을 나누어 가졌다는 사실도 유권자의 선택을 거쳐 대표가 구성되었다는 의미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선거구 정수는 무투표 당선의 발생과 뚜렷하게 관련되었지만 독식형과 분점형을 구분하지는 못했다. 2인 선거구의 무투표 발생률은 21.8%로 3인 선거구의 5.6%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는 선거구 정수가 무투표의 제도적 가능성을 넓히거나 좁히는 반면, 실제 의석 구성은 지역 정당환경과 공천구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투표 선거구 142개 중 141개는 양대 정당 공천 인원이 선거구 정수와 일치하고 제3후보가 진입하지 않은 조건에서 나타났다. 복수 정당이 정수를 나누어 채우면 분점형이, 한 정당이 정수 전체를 채우면 독식형이 성립하였다. 반면 동일한 양대 정당 공천구조에서 제3후보가 진입한 299개 선거구는 모두 경쟁선거였고, 그중 38.1%에서 제3후보 당선인이 나왔다. 이 결과를 무투표 선거구의 가상적 결과로 확대할 수는 없지만, 양대 정당의 공천 인원이 정수를 채운 구조와 제3후보의 당선이 양립할 수 있었다는 점은 확인된다. 무투표 당선은 선거일에 우연히 발생하기보다 공천과 후보자 진입을 거쳐 선거일 이전에 사실상 윤곽이 결정되는 현상에 가깝다. 그 법적 결과를 이해하려면 후보자 수가 형성되는 과정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첫 번째 제도적 함의는 선거구 정수와 후보자 공급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인 선거구에 무투표 당선이 집중된 결과는 3인 이상 선거구 확대 논의에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다만 본 연구는 정수 변경의 인과효과를 분석하지 않았고 4인 이상 선거구의 사례도 많지 않다. 정수 확대를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단정하기보다 소정수 선거구가 경쟁과 대표의 다양성에 미치는 제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함의는 정당 공천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다. 정당이 몇 명을 공천하는가는 내

부적 후보 선발을 넘어 투표 실시 여부와 유권자의 선택지를 좌우한다. 무투표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에서는 공천 기준과 후보 결정 절차, 제한적 공천이나 무공천에 대한 설명책임이 중요하다. 이는 후보 공천을 강제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공천 결정이 지역의 선거경쟁과 대표구성에 미치는 효과를 정당 내부의 재량만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뜻이다.

세 번째로, 무투표 당선을 선거관리와 대표성의 관점에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선거구 수만 집계해서는 독식형과 분점형의 차이, 정당별 공천구조와 후보자 진입의 부재를 파악하기 어렵다. 선거관리기관과 정당은 무투표 당선의 유형과 발생 조건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무투표 당선인에 대해서도 유권자가 경력과 정책 입장을 확인할 기회를 보완해야 한다. 무투표 당선은 매 선거 뒤 일시적으로 주목할 사안이 아니라 지방선거의 경쟁성을 평가하는 상시적 지표로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무투표 당선을 독식형과 분점형으로 구분하고, 최종 후보자 수가 정당의 공천과 후보자 진입을 통해 어떠한 정치적 구성으로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다만 제9회 선거만을 대상으로 한 횡단분석이며, 정당이 특정 수의 후보를 공천한 이유와 잠재적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배경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회차 간 비교와 함께 정당의 공천 의사결정, 후보자 진입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이 축적되면 제도적 대응의 초점을 선거구 정수, 정당 공천, 후보자 진입 가운데 어디에 둘 것인지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래영. 2018. “공직선거법상 무투표당선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 『법과사회』, 제58호.
- 문은영. 2024. “당선인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무투표 당선과 동수 득표 시 당선인 결정 방법을 중심으로”, 『지역과 정치』, 제7권 제2호.
- 송진미. 2022. “무투표당선 제도의 쟁점과 대안: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에 관하여”, 『이슈와 논점』, 제1993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송진미. 202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현황과 특징: 기초의회 선거구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77호).
- 이준한. 2024. “인천의 무투표 당선에 대한 비교연구”, 『인천학연구』, 제40호.
- 정성은. 2022. “지방선거에서의 무투표선거구 결정요인 분석: 제8회 시·도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8권 제2호.
- 조원빈. 2022. “2022년 지방선거 결과 분석: 선거제도와 정치적 효과”, 『의정연구』, 제28권 제2호.
- 표명환. 2016. “공직선거와 당선인 결정 방식”, 『토지공법연구』, 제73집 제2호.
- 표명환. 2024. “공직선거법상 무투표당선제도의 헌법적 문제와 개선방향”, 『법과정책』, 제30권 제2호.

- 하세현. 2022. “지방선거의 무투표당선 실태 및 입후보자 증대 방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30권 제3호.
- 하세현·박인술. 2021. “일본 지방선거의 무투표당선 선거구 결정요인 분석: 제19회 통일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 제11권 제2호.
- Burden, Barry C. and Rochelle Snyder. 2021. “Explaining Uncontested Seats in Congress and State Legislatures”, *American Politics Research*, Vol.49, no.3.
- Konisky, David M. and Michiko Ueda. 2011. “The Effects of Uncontested Elections on Legislator Performance”,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Vol.36, no.2.
- Myers, Adam S. 2018. “Changing Patterns of Uncontested Seats in Southern State Legislative Elections, 1984~2012”, *Social Science Quarterly*, Vol.99, no.2.
- Niemi, Richard G., Simon Jackman and Laura R. Winsky. 1991. “Candidacies and Competitiveness in Multimember District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Vol.16, no.1.
- Squire, Peverill. 2000. “Uncontested Seats in State Legislative Election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Vol.25, no.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시행 2026. 3. 19.] [법률 제21488호, 2026. 3. 19., 일부개정], 제190조 제2항 및 제275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577> (검색일: 2026.07.14.).
- 김재현, “6·3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500명 넘었다”, 『한국일보』(온라인),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52817450002350> (검색일: 2026.07.14.).
- 신지영, “6·3 지방선거, 수원시 기초의원 9명 무투표 당선”, 『경인일보』(온라인),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3790> (검색일: 2026.07.1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선거구 현황·후보자 명부·당선인 명부·무투표당선인 명부 및 개표결과. <https://info.nec.go.kr/> (검색일: 2026.07.14.).

【 Abstract 】

**Types and Conditions of Uncontested Municipal Council Elections
in South Korea's 9th Nationwide Local Elections: District Magnitude,
Local Partisan Environment, Nomination Structure, and Candidate Entry**

Jung, Sungeun

This study examines all 1,038 municipal council electoral districts in South Korea's 9th nationwide local elections. Of 142 uncontested districts, 84.5% were split allocations rather than single-party sweeps, and most occurred in two-seat districts. Sweeps were concentrated where the two major parties' vote-share gap was large, while split allocations were more common in relatively balanced areas. In 141 uncontested districts, the combined number of major-party nominees equaled district magnitude and no non-major-party candidate entered. By contrast, all 299 districts with the same nomination structure but non-major-party entry were contested, and such candidates won seats in 38.1% of them. The findings show that uncontested elections reflect how district magnitude, partisan context, nominations, and candidate entry shape candidate supply.

Key Words : Uncontested Elections, Municipal Council Elections, District Magnitude, Nomination Structure, Non-Major-Party Candidate Entry